##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72

발의연월일: 2022. 6. 28.

발 의 자:배준영·윤창현·이태규

김용판 • 정동만 • 정우택

김상훈・조명희・조수진

김예지 · 강대식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간 원활한 납품대급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여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들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전 세계적 물가상승 현상으로 인한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생결제제도의 활용,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유형자산 무상임대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1항 및 제8조의3).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대한 세액공제) 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	
는 내국인이 <u>2022년 12월 31일</u>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	
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	
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	
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	
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	
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	
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	
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	
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	
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	
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	

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한다.

#### ②·③ (생 략)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 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 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 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2024년 12월 31일
<u> 2024인 12                                  </u>

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 니한다.

- 1. ~ 4. (생략)
- 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해당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③ 내국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제2항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

1. ~ 4. (현행과 같음)
②
<u>2024년 12월 31일</u>
③
<u>2024년 12월 31일</u>

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
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
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
하여는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